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 3. 24)

1. 심사경과

가. 2005. 3. 17 : 사천시장제출

나. 2005. 3.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14호)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가. 제안이유

1회용품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제한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하향조정, 신고포상금 현물 지급 허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
- 2)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 3)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강화
 - 연 100만원 → 연 50만원(지급한도액 산정은 전국 기준)

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필상)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 1.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하향조정, 신고포상금의 현금이외의 지역 상품권 등 현물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을 년100만원에서 50만원(전국을 기준)으로 지급제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